

보도자료

2023. 8. 8.



양형위원회

문의

운영지원단장 범선윤
(☎ 02-3480-1924)

양형위원회 8/8(화) 제126차 회의 결과

양형위원회(위원장 이상원)는 2023. 8. 8. 16:00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6차 전체회의를 열어,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을 심의하였음

[심의 요지]

- ☞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·침해, 전략기술 국외·국내 침해, 방위산업기술 국외·국내 침해 및 누설·도용 등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여 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대폭 정비
- ☞ 기존에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되어 있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유출범죄를 분리하여 ‘산업기술 등 침해행위’라는 독립된 유형을 신설

1.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

- 기존 설정 범위에 더하여, 아래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하기로 함
 -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·침해(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)
 - 전략기술 국외·국내 침해(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)
 - 방위산업기술 국외·국내 침해(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 제1항, 제2항), 누설·도용(같은 조 제4항)
 - 저작권 침해(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2, 제3의5, 제3의6, 제3의7)
 - 부정경쟁행위[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, 제2조 제1호 자목, 카목 4)]

2.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유형 분류

○ 유형 분류의 기준

- 유사한 특성을 가진 범죄를 같은 대유형으로 묶음 ⇨ 양형인자 공통
-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를 같은 소유형으로 묶음 ⇨ 형량범위 공통

○ 법률 규정, 보호법익과 구성요건, 죄질과 법정형, 형량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 분류안을 정함

01¹ 등록권리침해행위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등록권리침해행위			

02¹ 저작권침해행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저작재산권침해			
2	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			

03¹ 영업비밀침해행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국내침해			
2	국외침해			

04¹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누설·도용			
2	국내침해			
3	산업기술 등 국외침해			
4	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			

05¹ 부정경쟁행위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부정경쟁행위			

- 기술유출범죄군이라는 별도의 범죄군은 신설하지 않고,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내에 ‘산업기술 등 침해행위’라는 독립된 유형을 신설하기로 함
 - 기술유출범죄군을 신설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범죄가 2개의 범죄군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는 적절치 않음
 - 영업비밀·산업기술 등 침해범죄도 다른 지식재산권범죄와 동일한 지식재산법리가 적용되거나 혹은 준용됨
 -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를 하나의 범죄군 틀 내에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적용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음. 반면 새로운 범죄군을 신설할 경우 해당 범죄군을 찾는 데 혼선을 야기할 우려 있음
 - 설령 기술(등)유출범죄군이라 명명하더라도, 이에 포함될 사건 수(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)가 너무 적어 별도 범죄군으로 신설할 실익 없음
 - 따라서 별도 범죄군을 신설하지는 않되, 지식재산권범죄 내에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되어 있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유출범죄를 분리하여 ‘산업기술 등 침해행위’라는 독립된 유형을 신설하기로 함

- 피해액 또는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는 하지 않기로 결정
 - 피해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(예: 횡령·배임범죄, 사기범죄) 엄격하고 세밀한 피해액 심리가 필요한데, 피해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
 - 손해액 심리가 필수적인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(민사) 사건에서도, 손해액을 정밀하게 산출하기 곤란하다는 한계로 인해 ‘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

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'는 규정(특허법 제128조 제7항, 저작권법 제126조 등 다수)을 두고 있고, 상당수의 사안에서 위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

- 지식재산 사건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도 사건의 심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, 피해액을 세밀하게 심리해야 하는 경우 양형심리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
- 피해 정도는 유형 분류가 아닌 양형인자 등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향후 회의에서 논의 예정

3. 향후 일정

▣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은 1)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, ⇨ 2) 유형 분류 결정, ⇨ 3) 권고 형량범위 설정, ⇨ 4) 양형인자 설정, ⇨ 5)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, 이번 회의에서는 1) 및 2)에 대하여 논의함

▣ 향후 다음 일정을 거쳐 양형기준이 확정될 예정

- **2023. 9.** 제127차 양형위원 전체회의: **마약범죄 및 스토킹범죄** 양형기준안 심의(설정범위 및 유형분류)
- **2023. 11.** 제128차 양형위원 전체회의: **지식재산권범죄, 스토킹범죄, 마약범죄** 양형기준안 심의(권고 형량범위)
- **2024. 1.** 제129차 양형위원 전체회의: **지식재산권범죄, 스토킹범죄, 마약범죄** 양형기준안 심의(양형인자, 집행유예 기준) 및 각 양형기준안 확정
- **2024. 1. ~ 2024. 2.:**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,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 진행
- **2024. 3.** 양형위원 전체회의: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심의 및 각 양형기준 최종 의결

4.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(제127차 회의)

○ 일시: 2023. 9. 18. (월) 오후

○ 안건: 마약범죄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심의(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)